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72 호

1976.9.1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63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정비지구 건축조례..... 3

제 1064 호 서울특별시 소방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4

◎ 훈 령

제 457 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정..... 5

◎ 고 시

제 20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 6

제 20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7

제 203 호 가축집합 시설에 대한 제한 (정지)
해제고시..... 7

✓ 제 204 호 장교제 14 지구 재개발 사업실시
계획인가..... 8

제 2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인가..... 8

제 206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신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872

13

제 20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1
제 208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지적승인	11
◎ 공 고		
제 191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	12
제 192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13
제 193 호	장안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공람공고 (추가분)	13
제 194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14
제 195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공고	15
제 196 호	연료사용기기 생산중지명령	15
제 197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실시계획 공람공고	16
제 19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1
제 200 호	K . S 표시 정지처분 해제	24
제 201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25
◎ 사 령		25
◎ 정		27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정비지구 건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63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정비 지구건축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 영 " 이라한다) 제 1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유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 18 조 제 1 항 제 11 호의 주차장정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그 대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 (주차장설치기준) 주차장정비 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0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50 평방미터 (동일대지안의 옥외주차장일 경우에는 200 평방미터) 이내마다 주차대수 1 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
2. 제 1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400 평방미터 이내마다 주차대수 1 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

제 4 조 (자동차의 진입로등) ① 주차장의 진입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육교, 도로의 교차점 및 소방수리표시판에서 5 미터 이내의 위치

2. 공원, 국민학교 및 유치원의 출입구 (이하 "공원등의출입구"라 한다)에서 20미터 이내의 위치 다만, 공원등의 출입구의 반대측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미터이내의 위치

3. 정유장 및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의 위치

㉔자동차진입로 및 통로의 개구부의 높이는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㉕자동차진입로의 종단 경사로는 1:6이하로 하여야 한다.

㉖주차장 1개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옥외주차장의 비율) ①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면적의 50%이상의 옥외주차장
2. 연면적 10,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면적의 20%이상의 옥외주차장

㉚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주차장은 옥내주차장의 출입구와 연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업무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64 호

서울특별시소방업무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업무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소방법제 31 조 및 제 39 조를 "소방법제 27 조"로 한다.

(별표) 소방업무수수료중 제 8 호내지 제 10 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9월 1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서울특별시 훈령제 457 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
제조사청구 및 심사청구 사안을 심
의하는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
관, 재무국장, 세정 과장, 세무조사과
장 및 구청 시민생활국장중에서 서울
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지정하는 1인이 된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
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2 조의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제조사 청구를 심의하는 경우에
는 청구인 또는 참고인에게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그 사
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들 수 있다.

②간사는 세무조사과장으로하고, 서기는 세무조사과소관 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0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일부변경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67 호 (71.6.10) 로 지적승인 고시된 당시 판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를 다음과 같이 지적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의 (73.4.4)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18.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일부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 로	1	13	35 m	9,500 m	중 암 동	장 지 리	
변경	"	"	"	"	"	"	"	석관동 363-1 일대일부변경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20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5 호 (76.6.21)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된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대통령령 제 7754 호 (75.8.22)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8.2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의 107 와 2 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단국중 , 고등학교

3. 면적및규모% 15,742 ㎡

4.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의 3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박정숙

5.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6. 8.

나. 준공예정일 : 77. 6. 30.

6. 위치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용산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203 호

가축집합시설에대한제한 (정지) 해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93 호 (76.4.29) 로 고시한 가축집합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정지) 을 76.8.16 일자로 이를 해제한다.

1976. 8. 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204 호

장교제 14 지구 재개발사업 실시
계 획 인 가

서울특별시고시제 143 (76.6.24)
장교제 14 지구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로 시행허가 고시된 장교제 7 지
구의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및
제 34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 25 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그 명칭일부를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76. 8 . . .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명 : 장교제 14 지구 재개발사
업지구 (지구 세분화로 당초 장교
제 7 지구에서 장교제 14 지구로변경)
-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중구수표동
47-6, 47-7, 59
- 3. 시행면적 : 1,181.8 m (357.5 평)

4. 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동구홍익동
292 김익진

5. 시행기간 : 76. 8 (인가일로부터
15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는 건물
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8. 기타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도시
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시행자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292)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 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76 호 (76.6.
28)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
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및 대통령령 제 7754 호 (75.8.
22)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 2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1의3의 2 필지
2. 사업의 종류 : 학교시설사업
명칭 : 전선 여자중, 고등학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29,725 ㎡
4. 시행자 주소, 성명 :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45의9
학교법인 위덕학사 이사장 손재석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6. 8.

나. 준공예정일 : 1976. 12. 2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강남구도곡동	산1의3	임야	6,492.1 평중 3,489 평	함경자	
	산1의16	임야	3,833.2 평중 2,608.8 평	함경자	
	산2의2	임야	3,333.8 평중 2,704.5 평	함경자	
	도로		195.7 평		
	계		9,000 평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도곡동	산 1의 3	임야	6,492.1 평중 3,489 평	관악구 방배동 1의11	함경자
	산 1의 16	임야	3,833.2 평중 2,608.8 평		
	산 2의 2	임야	3,333.8 평중 2,706.5 평		
	도로		195.7 평		
	계		9,000 평		

◎ 서울특별시고시제 20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대통령령 제 7754호(75.8.22)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학교)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 (계룡국민학교)	강남구 마천동 183-1 외 6필지	10,668㎡	
변경 (추가)	학교 (광희중학교)	성동구 응봉동 216 외 8필지	4,298㎡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학 교 (공업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100 외 47 필지	99,637 m^2	
변 경 (추가)	학 교 (동양공업전문학교)	영등포구 고척동 62-160 외 2 필지	25,944 m^2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 적 승 인

1. 건설부고시 제 8 호 (76.1.21)로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 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와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26.

서울특별시 장

○ 지 적 승 인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중로	2	141	15 m	2,250 m	창전동2-109	당인동 53-5	
기정	"	"	28	15	650	신수동	중 1-142	중 1-142요청
변경	"	"	"	"	"	"	"	위치일부변경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변 경 지 적 승 인

1. 건설부 고시제 109 호 (76.7.19)

로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제 13 조의 건설부 고
시 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일부 변경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1976. 8. 2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변경 고시 내역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공원	용산구 이태원동	446,551	증 18,305	464,856	
(폐지)	신설제 1공원	성북구 삼선동 5가	5,193	감 5,193	0	폐지
변경	신설제 2공원	안암동 140	2,570	감 330	2,24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91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177 호(76. 7.31)로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제2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 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 공고하였기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의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 사항을 서면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1976. 8.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92 호

환 지 계 획 일 부
변 경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영동 제 2지구, 영동 제 2지구 추가 및 영동추가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 제 33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공람에 공고한다.

2. 환지 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6. 8. 23.

서울특별시장

공 랑 내 용

1. 사업명 : 영동제 2 지구, 영동제 2 지구 추가, 영동추가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 신사동, 압구정 동, 일부토지 관악구 사당동 일부토지
3. 변경필지수 : 28 필지
4.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193 호

장안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공람공고 (추가분)

1. 건설부 공고 제 79 호 (76.6.30) 로 공고된 토지 구획정리 사업 장안평 추가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8. 2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서울 장안평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사업지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성동구 중곡동 각 일부

다. 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시행면적 : 92,165 (27,880 평)

마. 시행기간 : 76. . . (인가일)

80. 12. 31.

◎ 서울특별시공고제 194 호

환 지 계 획 일 부
변 경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역촌추가, 김포, 도봉토지 구획정리 사

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제 55조, 제 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 제 1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 공고합니다.

2. 환지계획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도봉, 역촌추가, 김포토지 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부토지
 서울특별시도봉구 방학동일부토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산동
 영등포구염창동

3) 필지수 : 55 필

4)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5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요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6. 8. .
 서울특별시장

1. 지정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6년수출목표액	비고
1029	유아실업(주)	윤재열	도봉 미아동 83 - 1	스웨터	\$ 180,000	
1532	동양수출산업사	유상도	영등포등촌동 296 - 16	옷걸이 단추	\$ 240,000	
980	동아섬유공업사	장병호	영등포시흥동 498 - 2	가연사 저지	\$ 80,000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6 호

연료사용기기생산중지명령

열관리법 제 1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료 사용기기 제조업의 생산중지를 명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6. 8. .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평가품목	승인번호	위반내용	처분	처분기간
대동내화공업(주)	김수동	영등포구영평동3가67	내화검토벽돌 고알루미나 내화단열	7-1001-11 7-1001-28 미승헌	형식승인을받지않고내화단열벽돌제조판매	건제조업의생산중지	처분일로부터6월이내내화단열벽돌형식승인을득할경우별도해제조치시까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7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
공 랫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76.2.13) 로 고시된 종로구 세종로 105 부근 미관광장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27
서울특별시장

공 랫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5 부근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미관광장
3. 사업의 규모
광장 7,110 ㎡
○ 주차장 1,580 ㎡
○ 녹지대 1,600 ㎡
○ 차 도 3,930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6. 9. 15 - 197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미관광장 계획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도림동 80-2	대	3.1	도림동 80	백덕권	74 등
" 81-4	"	26.9	" 81-2	김정란	"
" 106-7	"	1.1	" 106-3	정창주	"
" 106-1	"	14.2	" 106-1	한연택	"
" 105-3	"	7	" "	"	"
" 105-1	"	38	" 105-1	고산강응	"
" 105-6	"	1.4	" 105-10	고의덕	72
" 105-4	"	19	마포구 창천동 6-44	"	"
" 105-2	"	38	도림동 105-2	김정수	74
" 105-13	"	26	" 105-13	권영욱	73
" 105-5	"	29	중구인현동 2가 102-30	이세훈	74
" 117-7	"	5.3	체부동 193	김선아	75
" 118-4	"	3.3	창천동 6-44	고의덕	72
" 119	"	20.5	도림동 120	이영희	74
" 120	"	17	"	이미천	"
" 121	"	64	순화동 53	도성호	76
" 122-1	"	23.8	신당동 산 16-12	이경섭	"
" 122-2	"	34.7	" 417-7	임수차	"
" 123-5	"	1.1	청진동 267	임성호	77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도림동123-6	대	3	청진동 267	임성호	77
" 124-1	"	35.2	"	"	77
" 131	"	41	한강로1가 19	고관주	76
" 132-2	"	25.2	도림동 132-2	계남산업	80
" 132-3	"	20.6	옥인동 107-2	이남규	"
" 132-4	"	27.2	" 47-2	"	"
" 130-1	"	45.4	한강로1가 19	고관주	"
" 133	"	64	도림동 105	안명관	"
" 130-2	"	3.6	효자동 129	송인순	76
" 125	"	24	"	"	77
" 129	"	74	"	"	77
" 134	"	34	도림동 134	윤순형	80
" 135-1	"	30	" 135-1	유복길	80
" 135-2	"	34	" 134	최영화	80
" 128-1	"	27	" 128-1	정억근	76
" 128-2	"	22	충남아산군신보만가산리11	최병태	76
" 128-3	"	3.8	세종로 97	신광현	72
" 128-5	"	1.2	"	"	"
" 128-8	"	1	"	"	"
" 126-2	"	20	부암동 382-70	여월현	77
" 126-1	"	20	도림동 128-1	정억근	77
" 127-2	"	8	세종로 97	신광현	72
" 127-3	"	3.9	뚝운동 88-3	김만기의	77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도림동 143~1	대	104.8	내수동 1	대성출판사	77
" 142	"	35	도림동 142	김범룡	77
" 143~2	"	9	"	"	77
" 144~1	"	3	"	"	77
" 144~3	"	48.5	서교동 98~33	김재근	79
" 144~4	"	5.0	홍지동 146~1	최낙현	80
" 144~5	"	65.1	" 76~2	설중영	79
" 145	"	25	신문로1가 1~165	김재관	80
" 146~1	"	18.9	홍지동 146~1	최낙현	80
" 144~11	"	0.1	도림동 147	유광수	79
" 146~3	"	1.2	"	"	77
" 147	"	1.5	"	"	78
당주동 10~3	"	2.4	당주동 128~1	정억근	77
" 10~2	"	6.2	"	"	77
" 11	"	13.4	당주동 98~2	김정계	77
" 12~1	"	0.1	" 13	현종혁	77
" 12~2	"	0.2	"	"	77
" 13	"	53.1	"	조성범	77
" 14~2	"	32.5	계동 133~6	임의혁	78
" 14~1	"	89.9	가회동 123	박종계	78
" 14~3	"	4	"	"	78
당국동 15~1	"	6.8	도림동 26~2	김성자	79
계	필지 64	1,468.2			

건 물 조 사					
연 번	위 치	구 조	평 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도림동 103	목조와즙	16.2	도연동 103	김 남 이
2	" 104	"	12.0	104	박 균 채
3	" 81-2	연 와 조 목조와즙	311.5	진해시 학산동 28-396	손 성 락
4	" 105-3 106-1	목조와즙	113.68	" 106-1	박 근 배
5	" 105-2	"	20.0	" 105-2	김 정 수
6	" 105-4	연 와 조	12.0	" 105-4	고 의 덕
7	" 105-13	"	10.0	105-13	임 영 옥
8	" 105-5	철근육복	113.18	회현동 2가 192	이 세 훈
9	" 119	목조와즙	14.0	도림동 120	조 준 현
10	" 120	"	13.0	"	"
11	" 121	연 와 조 세멘부록	30.82	동교동 185~23	곽 영 월
13	" 122-2	목조와즙	21.0	" 122~2	임 영 숙
14	" 132-3	철 근 조	601.82	도림동 132~2	
15	" 132-2	"		계남산업주식회사	
16	" 132-4				
17	" 133	철 근 조	305.1	도림동 133 조안실업(주)	
18	" 125	목조연와조	83.2	효자동 77-30	송 인 순
19	" 126-2	목조와즙	10.0	부암동 32-70	여 월 연
20	" 128-1	"	13.0	" 128-1	정 역 근
21	" 128-2	"	12.83	아산군선이면주산리 111	최 병 선
22	" 126-1	"	16.72	" 128-1	정 역 근
23	" 134	철근조아파트	202.98	부암동 208~14	임 원 재
24	" 135-1	"	169.65	" 135~1	유 병 길

연 번	위 치	구 조	평 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5	도림동 142	철근조아파트	247.55	부암동 142	김 병 룡
26	" 145	"	153.03	신문로 2가 165	박 재 관
27	" 144-3	연 와 조	17.0	남대문로 4가 72	유 풍 무 역(주)
28	" 146-1	철 근	126.25	" 146-1	최 낙 현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 랑 공 고

1. 건설부고시제 738 호 (71.12.30) 로 고시된 " 신설동가각정리공사 "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동대문구신설동 60-4~신설동 131-50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신설동 가각정리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3 m 나. L= 224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8.10 ~ 77.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수 용 토 지 조 서							
순 위	당초지번	분 수용지번	할 지목	수용지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신설 60-4	60-6	대	7	신설동 81-1	김덕기	지상건물
2	169-9	169-12	"	12		국유지	
3	169-11	169-13	"	9	장위동 238-243	최상순	
4	168-3	168-14	"	7	정능동산 1번지	김인호	지상건물
5	168-4	168-15	"	7	장위동 233-287	곽기영	"
6	81-30	81-197	"	6	신설 81-30	박정빈	
7	81-128	81-198	"	5	" 81-128	김수철	지상건물
8	81-32	81-199	"	9	" 81-31	안충삼	"
9	81-43	81-200	"	9	" 81-43	송명섭	"
10	81-42		"	1	"	"	
11	81-46	81-201	"	0.7	" 81-46	박원희	
12	81-47	81-202	"	10	" 81-47	최화자	지상건물
13	81-55	81-203	"	20	장위동 68-161	조병철	"
14	81-66	81-204	"	3	신설동 81-66	김종옥	"
15	81-65	81-205	"	6	"	변옥남	
16	81-111	81-206	"	0.7	신설동 81-144	강신태	지상건물
17	81-112	81-207	"	8	"	강경희	"
18	81-79	81-208	"	0.3	" 81-79	이진형	"
19	132-43	132-235	"	11	" 132-43	장취진	"
20	132-44	132-236	"	0.8	" 132-44	김정걸	"

번호	당초지번	분할 수용지번	지목	수용 지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1	132-165	132-231	대	5	대전시대흥동 96	우두형	지상건물
22	132-46	132-238	"	5.6	"	"	
23	131-50	131-130	"	6	영평동3가 65	아세아양 행 (주)	
24	168-7		"	2	대구시원대동 78	김지희	
25	168-8		"	4	신설동 168-8	이종정	
26	132-42		"	2	용두동 829	최홍식	
				157.1			

수 용 건 불 조 서

순위	소 체 지	수용평수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신설동 132-46	5.6	종로6가 196	김성수	
2	" 132-165	5	"	"	
3	" 132-44	2.4	신설동 132-44	김정길	
4	" 132-43	31.5	"	"	
5	" 81-111	1.4	신설 81-114	강신태	
6	" 81-112	14	"	강경희	
7	" 81-65	6	81-66	변옥남	
8	" 81-66	3	"	김종욱	
9	" 81-55	25.7	장위동 68-161	조병철	
10	" 81-47	18.5	신설 81-47	최화자	
11	" 81-46	1.4	" 81-46	박원희	
12	" 81-43	17	" 81-43	송명섭	

순위	소재지	수용평수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3	신설동 81-32	27	신설동 81-31	안중삼	
14	" 81-128	15	81-128	김수철	
15	" 81-30	24	81-30	박정빈	
16	" 168-4	14	175-10	정병성	
17	" 168-3	14	정능동산1	김인호	
18	" 169-11	9	장위동 238-243	최상순	
19	" 60-4	13	신설 81-1	김덕기	
계		247.5			

◎ 서울특별시공고제 200 호

K S 표시정지처분해제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 21 조 및 공업진흥청고시
제 4175 호제 10 조 규정에 의거 서울
특별시공고 제 124 호 (76.5.29) 로
아 래

K S 표시정지처분한 다음회사의 제품
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해제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76.8.21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제 1010 호	제 1011 호	제 866 호
2. 제조업체명	신진밸브공업사	과 동	문래공업사
3. 대표자	박찬연	과 동	이장원
4. 소재지	영등포가리봉동 444	과 동	영등포동 1 가 119
5. 규격번호	KSB 2303	KSB 2312	KSB 8016
6. KS 표시 정지해제품목	청동 5kg/cm ² 나사식 게이트발브 (호칭 25%)	청동 10kg/cm ² 나사식 앵글발브 (호칭 25%)	자전거용헨들
7. KS 표시정지처분일자	1976.8.18	1976.8.10	1976.8.18

◎ 서울특별시공고제 201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서류를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6. 8.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제 2 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1,848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63 번지의 109 필지

(818-8,20,827-838,851-854, 374 구획)

라. 공람기간 : 1976.8 - 1976.9

(14 일간) 끝.

사 령

◎ 1976.8.20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김영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배복용

국가공무원법제 78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1976.8.27

영등포구 지방건축사 김우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6.4.14 (발령 제 204 호)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1월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 1976.8.31

마 포 구 지방행정 사무관 유문호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허운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1976.9.1

주택건설사업소 지방건축 기사 이완식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시민회관 지방건축 기사보 김용백
 시설과 근무를 명함.

시설과 지방건축 기사보 이상봉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 기원보 권옥래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 기원보 서정란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간호원 겸근자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농림 기원보 이완식
 양정과 근무를 명함.

◎ 1976.9.1

공무원교원 부이사관 이희형
 국방대학원 입교 기간중 서울
 특별시 근무를 명함.
 76.9.1 ~ 7.16
 1976년 9월 1일
 대 통 령

운수 3 과 지방행정 조상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총 무 과 지방전기 기사 김동호
 과학기술처 진출을 명함.

지방기계 기원보시보 정택동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

지방기계 기원보시보 천춘규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

지방전기 기원보시보 정수철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

<p>지방건축 지원보시보</p> <p>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p>	<p>전상돈</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p>
<p>지방간호 지원보시보</p>	<p>함용숙</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초임호봉을 임함.</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간호 지원보시보 손정에</p>

서울특별시장

정 정

시보 제 568 호 (76.8.4) 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02 호 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규정 개정규칙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으므로 이에 정정한다.

197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조 항 호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제 2 조 제 1 항	의사하	의사는
제 4 조 제 1 항	수련의의	수련의의
별표 2란의하단	- 누락 -	※ 본청 및 보건소의 결핵담당의사로서 결 핵또는 유사한 전문과 목표방허가를 받은 자 는 시립병원의 과장급 에 준한다.